

[서식 예] 내용증명(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제3자가 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 없음을 통지)

## 내용증명

발 신 인 갑 주소

수 신 인 을 주소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지칭함)께서는 채무자 병이 본인(발신인, 이하 '본인'이라고 지칭함)에 대하여 ~채권(예, 임차보증금채권, 예금채권 등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위 채권에 관하여 00지방법원으로부터 2018타채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제3채무자인 본인은 2018. . . 에 위 법원으로부터 위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병은 본인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채무자 병이 본인에 대하여 ~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인 2017. . .경 위 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귀하께 지급할 아무런 추심금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발신인 갑 (서명 또는 날인)

수신인 을 귀하



내 용 증 명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①항 4호 가목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 예컨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 이행의 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활용	·민법은 시효중단의 한 형태로 「최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 증명우편으로 송부하고 소송 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후일 분쟁을 미리 예방 할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며,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통지를 할 경우 내용증명에 의하여 통지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 배달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지 않음 대법원 2001다80815)
제출부수	·3부를 작성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
기 타	·내용증명 우편은 3년간 보관하며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음